



4.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 다.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 라.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 마.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4.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3/4/2 개정 · 7/1 시행)

1) 개정목적

- 납부대상 회사의 수수료 납부를 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¹⁾상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기 위함

2) 개정내용

- 전문인력 등록수수료제도 시행일 유예 및 징수주기 변경(14조 2항)
 - 원래 2013년 1월부터 전문인력 등록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었으나 예산배정 확보 및 담당부서 지정 등의 준비기간을 위해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유예하고 징수주기도 매월 발생한 등록수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함

나.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개정 (2013/4/3 개정 · 시행)

1) 개정목적

- 투자자 편의 향상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요국의 국채²⁾ 등 외화증권을 예탁수단으로 허용

*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 1항

2) 환금성 · 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US Treasury Securities)를 우선적으로 도입



2) 개정내용

증거금 예탁수단에 '외화증권' 추가(II.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3.)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증거금 예탁수단의 확대³⁾에 따라 협회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에 기재된 증거금 예탁수단 추가
 -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설명서(자본시장법 123조의 투자설명서 포함)를 교부해야 하며, 협회는 상품별 표준안 형식을 제시

기존	개정
현금, 대응증권, 외화	현금, 대응증권, 외화, 외화증권

다.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3/4/4 개정 · 4/5시행)

1) 개정목적

- 전자단기사채⁴⁾의 기업어음 대체 및 조기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의 개정⁵⁾에 따라 협회 인수업무규정에서도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의 경제적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개정내용

전자단기사채 등에 관한 특례 신설(22조)

- 인수업무규정 중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발행절차 간소화

채권의 주관회사 실적공시 업무중복 해소(18조 1항)

-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인수실적을 일별로 보고받고 있어 증권사 업무중복 해소를 위해 주관실적 보고대상에서 전자단기사채를 제외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

4) 전자단기사채는 CP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현행법상 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하는 경우 CP와 달리 인수업무규정 적용



구분	전자단기사채의 만기		CP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협회보고	면제	기존 규정유지	면제 (인수업무규정 적용대상 제외)
복수신용평가 및 사채관리계약	면제	기존 규정유지	
금리 결정 시 수요예측 실시	면제	기존 규정유지	
발행사와 이해관계인일 때 주관업무 제한	기존 규정유지	기존 규정유지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주관회사 실적 보고	면제	면제	

라. 「기업어음증권거래약관」 개정 (2013/4/17 개정 · 5/2시행)

1) 개정목적

- CP의 원천징수 누락방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⁵⁾으로 인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 만기일 전에 실물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일인 예탁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 실물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2조 3항)
 - 소득세법 시행령은 원천징수 누락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시기를 기존 “할인 매출하는 날”과 “만기일” 중 선택하는 방식에서 “할인매출하는 날”로 일원화
 - 단 기업어음이 만기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없음을 고려해 이 경우에만 만기일 선택을 허용
 - 이에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일로 정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 실물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5) 소득세법 시행령 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3/4/26 개정 · 5/1시행)

1) 개정목적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정자문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선인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관회사 제한에 관한 예외 인정 및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확보된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

2) 개정내용

- 코넥스시장 신설에 따른 용어정의 수정(2조 3호)
 - ‘기업공개’의 정의에 코넥스 시장 추가
-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 등 예외인정 확대(6조 1항, 5항)
 - 기존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주관회사업무 수행이 금지되거나 공동주관회사 수행이 의무화되어 있었음
 - 단 한국거래소, 증권금융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⁶⁾ 및 외국기업⁷⁾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자본시장의 기업자금조달기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자의무⁸⁾와 코넥스시장의 지정자문인제도가 도입
 -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협회의 인수규정상 주관회사 제한으로 인해 상장주선인 및 지정자문인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이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지정자문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선인인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할 경우에도 상기 이해상충 회피를 위한 의무의 적용을 배제
- 무보증사채의 인수 시 증권금융회사의 사채관리계약 체결 면제(11조의2 2항 6의2호)

6) 금융투자업규정 상 5%이상 의무보유

7) 거래소 규정상 유가증권 시장 10%, 코스닥시장 5% 의무보유

8) 3% 의무보유



-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할 수 있는 무보증사채는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간에 협회가 정한 표준사채관리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 단, 금융회사 등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발행한 사채의 경우는 사채권자보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동 계약서에 의한 계약체결을 면제하고 있음
- 법상 유일한 증권금융회사인 한국증권금융¹⁰⁾의 경우 금융당국의 신규업무 승인 및 감독 등 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와 위탁계약을 통해 국고금을 예수·운용하는 기관으로 경영 및 재무상의 안정성이 탁월
 - 상법상 사채관리업무 수행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채권자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경우도 사채관리계약 체결을 면제

연구원 이현정 (02-3771-0685, anet2@kcmi.re.kr)

9) 은행, 여전사, 종금사, 금융투자회사 등

10) 2012년말 기준, 공공자금 1.17조원, 국고금 243조원으로 국고금운용기관 중 최대규모